

2009. 9. 2.

수 신 : 제천시의회의장

제 목 :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1. 의안발의 서명서 1부.

2.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김병룡 의원 (서명~~보관~~/날인)
외 2인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김병동		
김영선		
김미화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의안번호	1372
------	------

발의연월일 : 2009. 9. 2.
발 의 자 : 김병룡의원외 2인

1. 제안이유

- 오늘날 대규모점포 개설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운영 사업장의 상권 위축이 가속화 되고 있으므로,
- 지역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체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업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경쟁력 향상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지역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제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정함(안 제5조)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지역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요청(안 제6조)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 지원(안 제7조)

3. 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2009.4.1, 타법개정]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41호, 2009.7.27, 일부개정]
-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9184호, 2008.12.26, 일부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68호, 2009.3.25, 일부개정]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045호, 2008.3.28, 타법개정]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타법개정]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달성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을 말한다.
2. “대형유통기업”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말한다.
3. “중소유통기업”이라 함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소상공인”이라 함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5. “상생협력”이라 함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상생협력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역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상생협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생협력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제천시의회 의원
2. 대형유통기업 지역 대표
3.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4. 재래시장 대표
5. 시민단체 대표
6. 유통업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7.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시 소속 공무원중 유통산업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 관장 부서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켓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 유통산업 동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에 관한 사항
 7.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 외에 상생협력촉진 및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 ⑥ 협의회는 제5항의 각호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기타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품질개선을 위한 신기술개발사업 등 지원
2.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판매촉진 등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지원
3.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 및 주민소득금고에서 소상공인이 시설·운전자금대출시 신용 보증기금 수수료 또는 이차보전금 지원
4. 소상공인의 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업 지원
5. 소상공인 업소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 지원
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 지원
7. 소상공인 지원 관련 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제천사랑(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한 할인 판매 차액 지원
9. 대형유통기업 입점관련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이해 관계인등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행·재정적 지원

제6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시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의 입점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 외부 위탁시 지역업체 활용 확대에 관한 사항
6. 지역상권 향상을 위한 공동 특화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7. 건전한 상거래 관리 운영기법 전수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
9.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소비자 물가조사 및 발표에 관한 사항
10. 영업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11. 기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09.5.8] [법률 제9584호, 2009.4.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2005.12.23, 2008.2.29, 2008.3.21>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임시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5.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점가"라 함은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7. "전문상가단지"라 함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8. "무점포판매"라 함은 상시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통표준코드"라 함은 상품·상품포장·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통표준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12. "물류설비"라 함은 화물의 수송·포장·하역·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13. "도매배송서비스"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집배송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5. "공동집배송센터"라 함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09.7.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7.27, 일부개정]

제3조 (대규모점포의 종류)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전문 개정 2006.6.22]

제5조의2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① 법 제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형유통기업(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중소유통기업 또는 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6.22]

[별표 1] <개정 2006.6.22>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삭제 <2006.6.22>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09.3.27] [법률 제9184호, 2008.12.26, 일부개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가. 업종의 특성
- 나. 상시 근로자 수
- 다. 자산규모
-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3.27】 [대통령령 제21368호, 2009.3.25, 일부개정]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 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별표 1] <개정 2009.3.25>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건설업	F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A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교육 서비스업	P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2] <개정. 2009.3.25>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제7조의2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회사(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회사의 주주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로서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으로 보아야 할 상시근로자수등(이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로서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회사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회사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 나. 손자회사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손자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곱하여 산출한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8.6.29] [법률 제9045호, 2008.3.28,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3>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타법개정]

제2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3.23>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0>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9.27]